
(사)한국패시브건축협회

회원사 가입안내

CONTENTS

01. 회원사 자격 및 구분	02
02. 가입요건	02
03. 제출서류	03
04. 가입비 및 연회비	03
05. 가입절차	04
06. 탈퇴 및 징계	05



1. 회원사 자격 및 구분

회 원 사		
정회원사 ¹⁾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운영하는 건축사사무소
	시공사	종합건설사 및 개인사업자로 건물 전체 시공을 담당하는 업체 또는 인테리어 시공을 담당하는 업체
전문공정사	패시브/저에너지 건축물의 공정을 수행하는 업체	
	단열 환기 기타	
자재회원사	협회의 'PHIKO 인증' 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생산 또는 판매하는 업체	
	단열 열교 기밀 창호 차양 환기	
신규가입 및 재가입 요청 시 협회 회원사 가입요건을 갖추고 이사회 참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승인		

협력사	특별회원
자재협력사 ²⁾ 및 기타 단체로 구성되며, 협회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 사업자로서 '회원사'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	협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나 단체로서, '회원사'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위촉

- 1) (사)한국패시브건축협회의 정관에 의한 총회 참석, 선거권 및 피선거권, 임원의 자격 부여
 2) 패시브/저에너지 건축물 구현에 순기능을 하는 자재를 생산 또는 판매하는 업체

2. 가입요건

회 원 사	정회원사	건축사사무소	1. 협회 실무자 교육 이수 (이론 + 실습교육) 2. 설계 실적 3건 이상 ¹⁾ (패시브하우스 외 가능)
		시공사	1. 협회 실무자 교육 이수 (이론교육) 2. 시공 실적 3건 이상 ¹⁾ (패시브하우스 외 가능)
	전문공정사	1. 협회 실무자 교육 이수 (이론교육) 2. 전문공정 현장평가 2회 실시 후 통과 3. 시방서 제출	
	자재회원사	1. 실무자 교육 이수 (이론교육) 2. 국내 총판업체 (대리점 불가) 3. 현행 국가표준(KS)에 따른 자재 시험성적서 보유 4. 협회의 'PHIKO 인증' 기준을 만족하는 자재의 생산 및 공급 5. [창호/환기] 현장평가 2회 실시 후 통과	
협 력 사	자재협력사 및 기타 단체	1. 국내 총판업체 (대리점 불가) 2. 현행 국가표준(KS)에 따른 자재 시험성적서 보유 (해당시)	

- 1) 실적이 3건 미만일 경우 (사)한국패시브건축협회 정회원사의 추천서로 대체할 수 있음. 또한 참여 작품일 경우 소속장의 확인서 제출이 필요함.
 * 실무자 교육 이수 대상자는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어야 함
 * 현장평가는 (사)한국패시브건축협회에서 수행하며, 비인증 현장의 경우 출장비 및 테스트 비용이 발생됨
 * 상기의 가입요건 전체를 만족하여야 가입이 가능함



3. 제출서류

목 록	회 원 사			협 력 사
	정회원사	전문공정사	자재회원사	
1. 가입신청서	○	○	○	○
2. 사업자등록증	○	○	○	○
3. 실무자 교육 수료증 ¹⁾	○	○	○	-
4. 실무자 교육 수료자 재직증명서	○	○	○	-
5. 자격증명서류 (해당시)	○	○	-	-
6. 회사소개서 ²⁾	○	○	○	○
7. 회사 로고 (AI 및 JPEG파일)	○	○	○	○
8. 제품 시험성적서 ³⁾	-	-	○	○
9. 제품 소개서	-	-	○	○
10. 현장평가 확인서	-	○	○	-
11. 시방서	-	○	-	-
12. 협회 정회원 추천서 (선택)	○	○	○	○

- 1) 실무자 교육 이수 대상자는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이어야 함.
- 2) 회사소개서는 자유 양식이며 협회 '회사소개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함께 제출
- 3) 협력사로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의 종류 따라 제품 시험성적서 제출 여부가 상이할 수 있음
- * 해당하는 모든 서류가 제출되어야 함

4. 가입비 및 연회비

(단위:만원)

구 분	회 원 사						협 력 사			특 별 회 원
	정 회원 사		전 문 공 정 사	자 재 회 원 사			중 소 기 업	중 건 기 업	대 기 업	
	건 축 사 사무 소	시 공 사		중 소 기 업	중 건 기 업	대 기 업				
가입비	100	300	300	300	600	1,000	300	600	1,000	-
연회비	50	100	150	200	400	600	150	400	600	-

- * 연회비 2회 미납시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 자격이 정지되며 협회 홈페이지 회원사 및 협력사 리스트에서 제외됨
- * 가입비 및 연회비는 환급이 불가함



5. 가입절차

01

가입신청

회원사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 이메일 제출 | info.phiko@gmail.com



02

서류검토

가입요건 만족 여부 검토



03

서류검토 결과 안내

가입 가능 여부 및 서류 보완요청 (해당 시)



04

이사회 검토

이사회 개최 (4회/년) 및 가입승인 여부 검토



05

검토 결과 안내

이사회 가입승인 여부 결과 안내 | 가입비 및 연회비 납부 안내



06

가입비 납부

가입비 및 연회비 납부



07

가입완료

협회 홈페이지 가입 승인 공지 및 회원사 별 권한 부여 | 회원증 우편발송

6. 탈퇴 및 징계

정 관 [제 8 조]

- ① 협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가 완료된다.

- ② 협회의 회원이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정회원의 발의와 이사회의 심의 결의로 회원 자격 정지 또는 제명에 이르는 각종 징계를 할 수 있다.
 1. 회원으로서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2.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3. 협회의 정관, 제 규정 및 의결기구의 의결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사회의 지탄을 받을 행위나, 협회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케 하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
 5. 협회의 행사나 사업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개인적으로 추진하여 협회에 손상을 입힌 경우
 6. 설계 및 시공 불량 하자 대응 미흡 등 불시 모니터링에서 협회 기준 위반 건수 3건 이상 발생할 경우
 7. 제 33조에 의한 회비를 2회 이상 미납한 경우
 8. 기타 간과할 수 없는 과실을 범한 경우

- ③ 회원자격 정지의 해소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기간과 방식에 따라 다음 이사회에서 소명가능하다.

- ④ 회원자격 정지 기간 중 해당되는 행위가 반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이사회를 통해 즉시 제명을 원칙으로 한다.